

붙임. 정의당 청년 공약

1.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실시

- ▲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충된 지방 재정을 재원으로, 만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 ▲ 배당금은 지역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2배
- ▲ 일정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배당금 지급 후 1년 이내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2. 시·도립대 무상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 ▲ 전국 8개 시·도립대학교 등록금 무상실시
- ▲ 현행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 2.5%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1.5%~2.5%까지 이자 지원

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기화균형채용제

- ▲ 광역단체별 감사관실에 '채용비리 신고센터'의 운영을 상설화
- ▲ 채용비리 관련 전면 재조사, 비리 관련자 업무 배제 및 중징계 무관용 원칙
- ▲ 기화균형채용제 도입.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에 있어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할당

4.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

- ▲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조정

5. 청년 아르바이트 대상 갑질과 체불행위 근절

- ▲ 지자체-노동부(지청)-검·경 간 부당노동행위 합동 대책반 구성
- ▲ 자치단체별로 민간근로감독관(명예근로감독관) 확대(근로감독관 대비 1:1 수준) 상담 및 현정점검 강화
- ▲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 체당금 제도 행정지원과 함께 지자체에서 '체불 임금'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자치단체 조달 3년간 계약체결 금지

6. 청년디딤돌 수당 등 지역형 청년실업부조 도입

- ▲ 광역시도에서 '청년 디딤돌' 수당 등을 신설해, 청년구직수당 외에 추가로 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 차액분) 지급
-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15세~35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업부조' 도입

7. 대학기숙사 확충 및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 ▲ 주택공급지원이나 전세 및 월세 등 주거자금 대출지원방안을 명시한 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
- ▲ 월세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연 2% 금리 이하)
- ▲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8. 청년 참정권 확대와 청년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조정
- ▲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대통령 40세 →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25세 → 23세, 지방의원 25세 → 18세)
- ▲ 청년기본조례 제·개정을 통해 청년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사항 규정

청년공약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하 발표 순서)

정혜연 서울시의원 비례 출마자

오수환 대전시 중구 기초의원 출마자 (중구 가 선거구)

권대훈 서울시 강동구 기초의원 출마자 (강동구 사 선거구)

이기중 서울시 관악구 기초의원 출마자 (관악구 아 선거구)

왕복근 서울시 관악구 기초의원 출마자 (관악구 마 선거구)

주세훈 서울시 성북구 기초의원 출마자 (성북구 나 선거구)